

대전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4나103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4나1033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1가합104607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피고, 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중영

변론종결 2024. 4. 17.

판결선고 2024. 6. 5.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1가합104607 판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승 계 참 가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4,381,73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 계 참 가 취 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63,464,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승계참가취지와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 주식회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만이 항소하였다.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므로(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나,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이상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한편, 제1심 공동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에서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 주식회사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8면 제14행 이하의 각 “승계참가인”을 “원고승계참가인”으로 각 고침
○ 제9면 제12행의 “없다” 다음에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추심권한을 상실하여 부당이득반환 등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가 각하된 이상, 원고승계참가인이 승계할 원고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할 것이어서 그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1)”를 추가함

○ 제9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앞서 존재하는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피압류채권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거나 그 청구채권이 소멸하여 부존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 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제2.의 나.항 ‘2) 원고 A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8. 8. 이전에

이미 ① 대전지방법원 2018타채56385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권자 M, 청구금액 600,000,000원, 피고 송달일 2018. 7. 11., 을 제1호증의 4), ② 같은 법원 2018타채100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G, 청구금액 1,060,493,150원, 피고 송달일 2018. 8. 7., 을 제1호증의 5), ③ 같은 법원 2019타채539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H, 청구금액 350,267,416원, 피고 송달일 2019. 4. 15., 을 제1호증의 12)이 각 발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 또는 원고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앞서 존재하는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 등의 피압류채권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특히 위 ② 기재 청구채권 등의 청구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한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4362호로 G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사건이 계속중이다), 달리 위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실체법상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는 위 ②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가 ‘대전 서구 E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제1 채권은 ‘잔여공사대금, 금융비용, 세금, 각종 공과금, 설계감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기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및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압류 및 추심할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5861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②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상 채권과 이 사건 제1 채권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건물의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두 채권은 서로 그 법률적 구성만 달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기초에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에 앞서 피고에게 송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무효, 부존재 또는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승계참가인이 승계할 원고의 권리 내지 추심권능이 존재한다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모성준, 판사 송석봉, 판사 이흥주

1) 한편, 전부명령의 효력은 전부명령의 확정시에 발생하지만(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고(민사집행법 제231조),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상 압류의 경합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송달일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부명령에 앞서 피고에게 송달된 위 각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 3건의 청구채권 합계액(2,010,760,566원)이 피압류채권인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청구액(1,684,381,734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승계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자신과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추심권능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